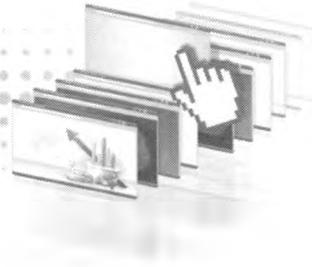


2012 계약심사 사례집





차례

I 계약심사 개요

2012 계약심사 실적 _ 5

2013 추진계획 _ 8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토목공사 _ 13

건축공사 _ 37

전기공사 _ 51

건설기술용역 _ 59

학술연구용역 _ 69

일반용역 _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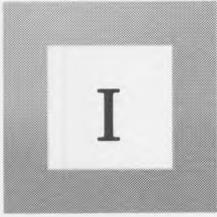
물품구매 · 인쇄 _ 95

시 · 군 자체심사 사례 _ 111

III 부록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_ 137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_ 151



계약심사 개요

- 01 2012 계약심사 실적
- 02 2013 추진계획



I | 2012 계약심사 실적

□ 총괄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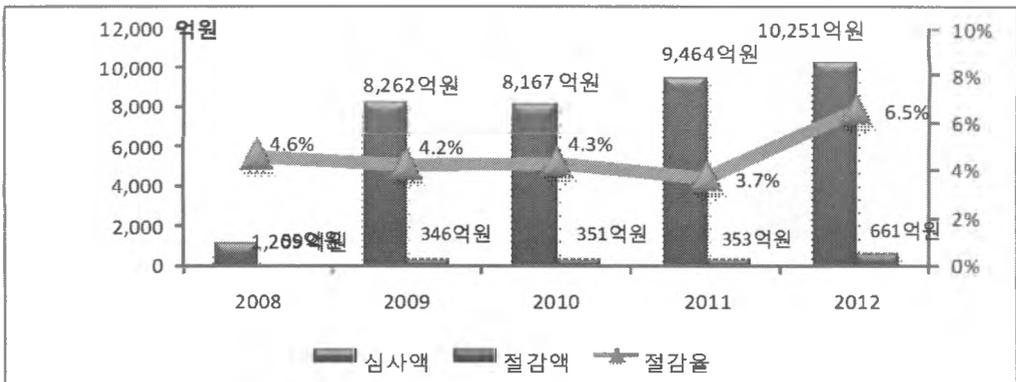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고
계	3,139	3,735,265	3,558,584	176,681	4.7%
2012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2011	917	946,399	911,065	35,334	3.7%
2010	596	816,678	781,602	35,076	4.3%
2009	526	826,172	791,566	34,606	4.2%
2008	66	120,899	115,359	5,540	4.6%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계	1,893	129,142	4.2	864	44,788	7.0	382	2,751	7.6
2012	612	50,761	6.1	245	14,071	7.9	177	1,293	6.9
2011	603	23,529	3.1	231	11,187	6.4	83	618	10.0
2010	329	23,703	3.7	208	10,958	6.5	59	415	9.0
2009	287	25,679	3.7	178	8,511	7.1	61	416	6.3
2008	62	5,470	4.5	2	61	18.1	2	9	5.4

➤ 연도별 변동추이



□ 2012 심사실적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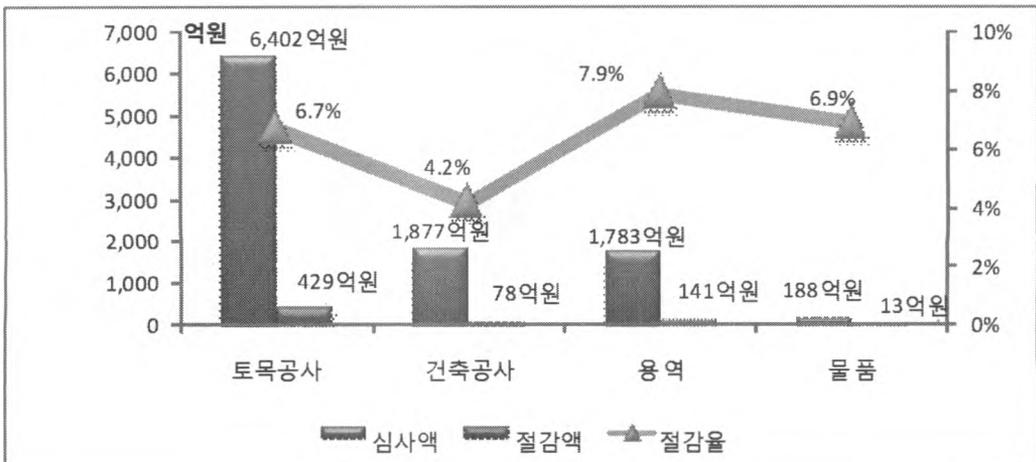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토목공사	477	640,223	597,287	42,936	6.7%
건축공사	135	187,745	179,920	7,825	4.2%
용역	245	178,314	164,243	14,071	7.9%
물품	177	18,835	17,542	1,293	6.9%

●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본청	105	75,012	72,389	2,623	3.5%
사업소	137	39,330	36,895	2,435	6.2%
출연기관	79	59,596	54,506	5,090	8.5%
시·군	713	851,179	795,202	55,977	6.6%

> 연도별 변동추이



□ 주요사례

- 자체 심사기준 적용으로 용역분야 예산절감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폐콘 13천원, 폐아스콘 14천원)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산정방식 개선(3개 업체 산술평균)
 - 학술연구용역 경비 기준단가 마련(6개 비목)
- 계약심사 절감액 재투자 유도
 - 심사부서 : 절감액 예산부서 통보(월별)
 - 예산부서 : 자체 검토 후 예산 감배정, 추경 반영 등
- 절감액 BEST
 -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6.1억원)
 - △△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12.9억원)
 - ○○시 하천 정비 공사(11.0억원)
 - ○○군 수해복구공사(10.3억원)
 - ○○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공사(8.7억원)
 - ○○시 소하천 기꾸기 사업(8.0억원)
- 절감률 BEST
 - ○○시 ○○보 보수공사(63.3%)
 - ○○군 ○○고 폐기물 처리용역(48.1%)
 - △△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44.5%)
 - △△군 ○○주차장 고객쉼터조성공사(42.4%)
 - ○○군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37.4%)
 - ○○군 ○○도로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35.5%)

Ⅱ | 201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정한 계약심사로 사업원가의 적절성과 적법성 확보
- 계약심사 전문화로 심사능력 조기정착
-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및 절감예산의 일자리창출 재투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심사부서의 기능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 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효율,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견적가, 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증감금액 기준은 ES증가분을 제외한 금액
-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등의 전문공사는 도 및 시·군 대상기관 발주부서 자체 추진
 - 발주기관 및 부서 내부인력 활용
 -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도, 공기업, 출연기관, 시·군(보조사업)
- 의무적 심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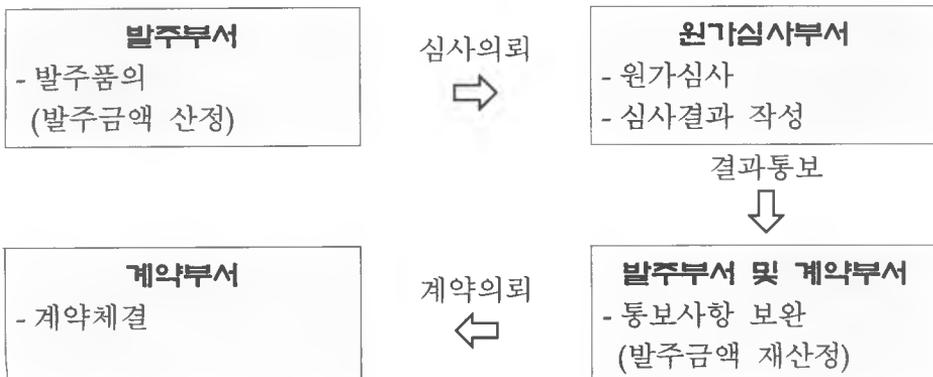
대상사업		도	시·군
원가심사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공사 : 3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 3억원 이상 ▪ 전문공사 : 2억원 이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 2억원 이상 ▪ 일반·학술 : 1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 심사제외 대상

-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사업
- 조달발주,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100억원 이상) 사업
-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별도의 수수료율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사업의 성격 등 심사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 등

□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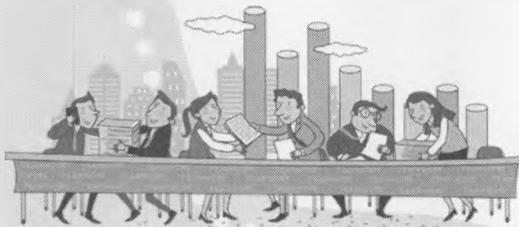
● 흐름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01 토목공사
- 02 건축공사
- 03 전기공사
- 04 건설기술용역
- 05 학술연구용역
- 06 일반용역
- 07 물품구매 · 인쇄
- 08 시 · 군자체심사 사례





토목공사

○○지구 비점오염 저감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배수공 L=3,152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05,244	281,070	24,174	7.9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터파기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00%
배 수 공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벽체, 0~7m)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축조블럭 - 표준품셈3-4-1 프리캐스트콘크리트블럭 설치 적용 • 자연석(전석)쌓기 - 표준품셈7-1-3 전석쌓기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현장여건을 감안한 작업품 산정
- 전석쌓기 2012년품셈 개정된 품 등 표준품셈 적용 검토

○○천 ○○제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하천개수 L=0.386k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2,190	308,750	33,440	9.7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 제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터파기(수중발파암 0~1m)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00% • 사토운반 : 로우더(1.78m³) → 로우더(2.87m³)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형자연석붙이기 - 표준품셈7-1-3 전석쌓기 적용
호 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호안블럭 → 표준품셈13-4-2 블록붙이기 • 식생매트설치 → 표준품셈13-3 식생매트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축제공 등 토공량이 많은 현장은 장비조합 검토
- 구조물공, 호안공의 단가산출시 불필요한 품 계상여부 확인

○○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탐방로개설 L=620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205,115	1,125,320	79,795	6.6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데크 및 목교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철물제작설치(보통)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 무수축모르타르 → 일반콘크리트기초 ● 목재가공 및 휨스설치품 - 목재가공설치 → 보통구조(하) ● 폼할증 이중계상 → 녹막이페인트칠 등 수정 ● 기둥 및 레일장선 : 자재할증 7% → 5%로 조정
대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운반 → 일괄경비 적용(덤프트럭 24ton) ● 자재할증 감소로 인한 자재운반 및 헬기운반 물량(감소)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데크 및 목교설치품 등급적용 적정여부 및 자재할증 적용 검토
- 현장여건에 적정한 공법 적용여부

○○천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하천개수 L=291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13,090	280,490	32,600	10.40%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메우기 : 인력 10%+기계 90% → 기계 100% • 법면보호공 → 작업반장 삭제
호 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석깔기 → 사석부설 및 고르기(표준품셈)적용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 설명판, 중기운반 → 경비성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현지여건 감안한 과다설계·계상 검토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여부

○○지 제당 확장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저수지1개소(L=73.5m, H=3.2~16.7m, B=4.0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98,870	763,990	34,880	4.3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풍화암) : 로우더(1.78m³) → 로우더(2.87m³)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가공 및 조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운반 → 경비성단가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자재 운반장비의 비교로 경제성 검토
- 철근량에 따라 경제적인 가공품 적정여부 검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로개설(L=410m, B=8.0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14,650	312,190	102,190	24.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사토(토사) → $rt = 1.6t/m^3$, $t5 = 0.5$ 적용
부 대 공	• 안전시설비 → 경비성단가 적용 • 미끄럼방지포장 → 삭제(신설도로 미적용)
자 재 대	• 합판, 각재, 제수변질개 등 자재단가 조정
제 경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 3,294,000 → 2.48%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토석의 단위중량 적정 적용 및 덤프트럭(자동덮개) 적용으로 경제성 검토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L=1,518m, B=2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116,400	6,506,500	1,609,900	19.8%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8% → 1.81%+3,294천원 • 환경보전비 삭제 - 세륜세차시설 등 내역에 계상 • 기타경비 : 6.6% → 6.3%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암막기(브레이크) - 일반발파, 진동제어 발파 구분 적용, 발파암 소할 반영 • 사면보호공 : 줄떼, 평떼 → 식생매트, 면고르기 조정 • 사토(발파암) 발생분 순성토(토사) 구간 유용 • 터파기 Cm=20Sec(135°) → 18Sec(90°) • 폐기물적사 E=0.35 → 0.45
배 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옹벽식측구 문양거푸집 할증 삭제 • 암구간 맹암거 부직포 삭제 • 도수로 및 산마루측구 합판거푸집 4회 → 유료폼 • 산마루측구 500×450 → 300×300 단면 조정 • BOX설치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 수로BOX(4.0×1.5) 철근(H13) 0.877 → 0.207ton(m당)

항목	심사결과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BOX, 역T형옹벽 철근가공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보강토옹벽 설치구간 → 저가인 용지매입 방안으로 조정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구간 및 성토고 2m 이상 구간 보조기층 조정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지병 - 도로안전시설 설치간격 수량 조정 • 낙석방지책 절토고를 감안하여 수량 조정 • 가드레일 완충시설 추가 • 신설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삭제 • 골재운반 덤프트럭(24톤) t5=3.77 → 0.5(자동덮개 적용) • 가설사무소(창고) → 규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사무소 530㎡ → 330㎡, 가설창고 100㎡ → 80㎡ • 가로수 왕벚나무 흉고직경(8cm) 굴삭기 0.7㎡ → 0.4㎡
사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순환골재 반영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374호)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심사 착안사항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적정여부
- 현장여건 감안한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교육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수목이식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53,000	668,000	85,000	11.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관급/1.1)×1.24% 적용
식 재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35 수간보호 품 적용 : 조경공 0.97 → 0.93, 보통인부 0.51 → 0.49 - 녹화끈 자재단가 조정 - 현장내이식(R25) 식재 조경공 1.1 → 1.05, 보통인부 0.52 → 0.51 - 현장내이식 굴취 품 야생상태가 아닌 경우로 적용 - 초화류이식 식재 품 조정 • 수목식재 : 수목 자재대 가격정보 비교 저가 적용
시설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러폰드 A, B 잔토처리 인력 → 기계 적용 - 판석불임 습식 바닥 석공 0.49 → 0.4 보통인부 0.15 → 0.2/평벽 석공 0.57 → 0.46 보통인부 0.46 → 0.36

항 목	심 사 결 과
시설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석판석 물가자료지 등 정보지와 비교 저가 적용 • 생태연못 : 조경석농기 → 야면석붙임 적용 • 경사로 잔토처리 인력 → 기계 적용
포 장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블럭포장 - 쇠석자갈(T50) 삭제 - 지오텍스깔기 보통인부 품 0.03 → 0.0015 • 인조화강석블럭 - 투수시트깔기 보통인부 0.03 → 0.0015 • 잔디블럭포장 쇠석자갈(T50) 삭제, 투수시트깔기 품 수정 • 아스콘포장보수 - 프라임코팅(MC-1, RSC-3) 삭제 • 데크포장 상세도 제목 수정, 잡철물제작설치→잡철물설치 - 하드우드(T19) 수량 검토(T30으로 산출됨) T19 • 자연석경계석 조경석농기 → 표준품셈 7-2-1 뒷길이30cm/야면석 메붙임 적용 • 재료분리경계석 레미콘, 콘크리트타설 수량 수정 (경계석 부분 감) - 시공량 Q=110 → 150 • 사고석경계석 레미콘, 콘크리트타설 수량 수정(경계석 부분 감) - 사고석농기 조경석농기 → 표준품셈12-5-3-2 Q=140
기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사무소(컨테이너) 경비성단가 적용 및 손율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자재단가(조달,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비교 저가적용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호안공 L=220m, 교량공 L=118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700,000	2,464,000	236,000	8.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비 제외 → 직접공사비에 환경보전비(세륜시설/오탁방지막) 항목 반영으로 중복 계상
축 제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면보호공(줄폐) 보통인부 6.9 → 4.5 • 순성토 덤프운반 t3=0.8 → 0.5, t4=0.42 → 0.15 • 성토부법면다짐 수량 확인 → 성토면만 적용 - 유압식 백호(0.7m³) Q=77.7m³/hr 적용
호 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리스돌망태 건설표준품셈 13-24 적용
교 량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적용 • 교대부 가시설(Sheet pile) 삭제 • 부대공 흙관부설및철거 철거품 오적용 D1200 → D800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고철공제 적용 • 세륜시설 및 가설사무소 경비성단가 적용 - 세륜시설 손울 누락 • 골재운반 24톤 덤프트럭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착안사항

- 현장여건 감안한 가설공법 적용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 전국자전거 네트워크사업

□ 사업개요

- 사업량 : 자전거도로개설 L=1.8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69,110	787,450	181,660	1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10.5 → 9.6, 기타경비 6.1 → 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48%×1.2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개기 → 고철공제(누락) 적용 • 순성토운반 L=10 → 5km • 터파기 Cm=20(135°) → 18(90°)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중력식옹벽 문양거푸집 삭제(전면벽 비노출) • 철근가공조립(보통) 현장가공 → 공장가공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비 교통정리비 2인 1조 → 개소당 1인 • 품질시험비 장비운반차량 소요경비 삭제 • 기존도로유지관리 2회 → 1회 조정
사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골재 구입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골재량15%) 반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입회조사비 354,545 → 240,000원 • 부지임대료 공사기간(월수)÷12 누락 - 임대 실면적 조정 및 야적장 면적 삭제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적정여부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순환골재 의무대상 여부

○○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축제공 L=3,462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013,800	7,912,100	1,101,700	12.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법면다짐 - 유압식 진동콤팩터(0.7m³) +유압식백호(0.7m³) Q=77.7m³/hr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단가 수정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석쌓기 기초콘크리트 삭제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배수관부설 : 소켓접합 → 고무링접합 • 철근가공조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교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가공조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둑마루포장 하부 보조기층 삭제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 줄때 6.1매 → 3.7매, 380원 → 350원/매(가정) • 마운딩조성 : 기계 70%+인력 30% → 기계 90%+인력 10% • 조경포장 모래, 자갈, 혼합골재 등 골재단가 조정 • 사고석 포장 등 포장품 건설표준품셈 12-3-3 • 경계석 설치품 건설표준품셈 12-5-3 적용

항 목	심 사 결 과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구조물철기 고철공제(누락) 적용 • 골재운반 → 경비성단가 적용 • 세륜세차시설 설치품 적용 → 환경보전비 요율 삭제(중복) •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 100,000원/m² → 15,000원/m² 적용
관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석쌓기 기초콘크리트 삭제에 따른 레미콘 물량 감 • 기존 식생블럭 유용에 따른 블록 물량 감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로 확포장 L=1.14km, B=30.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738,000	1,731,000	7,000	0.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 통행과 연계되도록 조정 • 화단 경계부 → 도로구역 밖으로 설치 • J형측구 → 구조 검토에 따른 철근수량 조정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깨기 → 철근절단(표준품셈 적용) • 법면보호공(줄떼, 평떼) → 작업반장 삭제 • 순성토 → 덤프트럭(24ton), t5=0.5
우 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형측구 → 동바리 삭제, 철근가공 및 조립(간단)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 벽체(0~7m) • 수밀시험, CCTV조사 → 경비성단가 • 종배수관(VR관, D1000) → 접합품 누락 60m반영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 안전시설 → 경비성단가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로 선형개량 L=700m, B=9.5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04,310	1,171,500	232,810	16.6%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성토(막자갈) 채집 및 운반 - 장비 혼들어 채집 → 채집량의 70% 사용
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측구 수량 조정 - 레미콘 : 0.22×0.18 → 0.22×0.17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골재운반 - 수량 : 6,156m³ → 5,394m³ - 덤프트럭 15ton → 덤프트럭 24ton, 운반거리 조정 ● 컨테이너 사무실(창고) → 경비성단가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오수관로 D200mm~D300mm(L=4,196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713,030	2,559,260	153,770	5.6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15% 이상) 의무사용 → 269m³ • 조립식간이흙막이(판넬) 굴착폭 → 1.3m 축소 - 토공 및 포장 수량 재산정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터파기(백호 0.7m³) Cm=21sec → Cm=18sec • 토사터파기(백호 0.12m³) 기계 90%+인력 10% → Cm=15sec, E=0.45 • 다짐되메우기(관상단, 백호0.7m³) → Cm=18sec • 다짐되메우기(관상단, 백호0.12m³) → Cm=15sec • 다짐되메우기(관주위, 백호0.12m³) → Cm=15sec • 모래부설량 재산정 • 폐기물적사(백호 0.12m³) E=0.35 → E=0.45 • 아스콘절삭 폭 4.5m → 3.5m 적용 → 현지 1차로 폭만 절삭, 깨기 폭 중복부 제외

항 목	심 사 결 과
오 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펌프장 - 수중그라인더펌프 → 관급자재대 적용
배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마당부) → 보통인부 0.2인 적용 • 폐기물적사(백호 0.12m³) E=0.35 → E=0.45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쇄석, 아스팔트, 콘크리트소운반 - 경비성단가 적용 • 안전시설비, 조립식가설건물 → 경비성단가 적용 • 조립식간이흙막이(판넬) → 임대(손울) 적용 • 슈트파일 자재비 누락 → 임대(손울) 적용 • H형강 자재비 누락 → 임대(손울) 적용 • 슈트파일 및 H형강 자재운반비 추가 반영 • 아스팔트유제 자재비 누락 → 관급자재대 반영 • CCTV조사, 수밀시험 → 별도 발주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자재대(J/1.1) 제외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 현장 여건에 적절한 장비 적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지하저류조 V=9,700m³(A=1,830m², H=6,4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359,900	7,949,170	410,730	4.91%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Cm=21 → Cm=19sec • 사토운반 : 덤프트럭 15ton → 24ton 조정 • 기존구조물깨기 E=0.35 → E=0.45 • 철근콘크리트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 135ℓ, 아세틸렌 0.05kg, 용접공 0.02인 - 들어내기 : E=0.45
저 류 시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가공및조립(보통, 복잡)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합판거푸집(3회, 4회) → 유로폼
포 장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흙막이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삭기 : 0.4m³ → 0.7m³ - 토류벽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막이박기 및 뽑기 8일 → 2.5일 → 관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2일 →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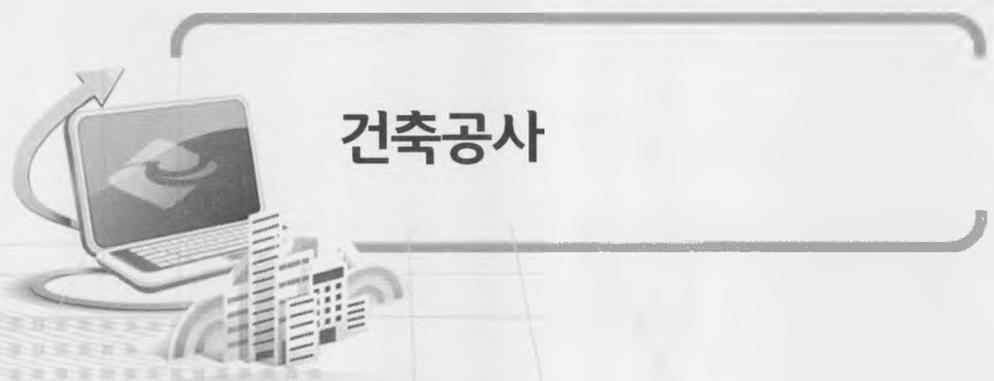
항 목	심 사 결 과
조 경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캐기 - 산소 135 ℓ, 아세틸렌 0.05kg, 용접공 0.02인 - 들어내기 : E=0.45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소 : 면적조정 360 → 330m² • 품질관리비, 중기운반, 가설웬스, 세륜세차시설, 안전보호책, 품질관리차량비 → 경비성단가 적용 • 배수공(고철) : 0.604ton → 29.349ton 조정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비 삭제 → 세륜세차시설과 중복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적용 - 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사각파고라, 평의자, 육각정자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등 검토
- 과다설계 및 중복계상된 내역 검토



건축공사

○○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엘리베이터 3기, 사료관 연결통로, 데크계단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6,280	1,142,090	194,190	14.5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창호공사	• 연결통로 관람객 조망을 위해 수평연결 창호 설치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1호기) : Built up → Roll shape
유리공사	• 유리끼우기 및 닦기 조달청(가격정보) 단가 적용
석 공 사	• 화강석, 인조대리석 조달청(가격정보) 단가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개별창호를 수평연결창호로 적용하여 관람객 조망확보 및 재료비 절감
- 엘리베이터 틀은 공장제작된 H형강을 사용하므로 Roll shape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단가비교 적용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수영장(6레인×25m),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216,969	4,092,005	124,964	2.9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가설보호막 삭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파일 및 지정공사	● 콘크리트말뚝머리정리 물량조정 : 474본 → 237본
목공사	● 데크공사(노무비) : 1식견적→건설표준품셈 적용산출 - 아연도각관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 기타철물 : 잡철물제작설치(보통) - 데크깔기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영구배수시스템	● 견적서상 공과잡비 삭제
수영장 부속시설	● 수영장부속시설 1식→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내역산출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심사 착안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데크공사 1식견적내역을 건설표준품셈 활용하여 하지철물설치와 데크깔기로 구분하여 산출 적용
- 견적서의 공과잡비와 원가계산서상 제비율적용의 중복여부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연면적 2,38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108,567	3,062,169	46,398	1.51%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미장공사	● 콘크리트면마무리(천정) : 10%가산 미적용
수장공사	● 석고판본드붙임(천정) : 30%가산 미적용
목공사	● 합성목데크설치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금속공사	● 스텐상자홈통 잡철물제작설치 : 보통 → 간단
지붕공사	● 지붕물청소 삭제 : 건축물현장정리에 포함
기계설비	● 옥외배관공 : 노무비 10% 감액적용(표준품셈 기계1-1-3)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문화재수리표준품셈(문화재청, 2012)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가산적용 적정성
- 데크공사의 하지철물은 구조(간격), 재료규격, 시공방법 등 종합 검토
- 지붕공사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및 건설표준품셈과의 중복산정 여부

○○교육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지하1, 지상1층 1동, 연면적 2,389㎡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196,123	4,830,779	324,166	7.0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내부수평비계 → 강관조립말비계
터파기	• 연암 : 소형브레이커+백호0.7㎡ → 대형브레이커+백호0.7㎡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표준라멘구조) - Built up, 60톤미만 → Rolled shape, 60톤미만 (철골공 5.29인/톤) • 철골곡면가공비 삭제 (철골가공조립에 포함)
목공사	• 목재데크설치 - 재료비 관급 구매 - 잡철물제작설치(철제)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수장공사	• 철제벽틀설치, 외단열시스템 하부틀 - 잡철물제작설치(철제)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내부공사의 여건(높이, 면적, 천정시공 난이도 등) 검토로 적정 비계공법선정
-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 따라 철골가공조립 노무공수 및 작업범위 검토

○○생가복원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생가시설 3동, 부대시설 3동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25,115	717,987	7,128	0.97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공통	• 토공사 단가 통일(건축, 토목, 조경 공종간)
가설공사	• 강관비계매기 : 박공지붕 처마높이 기준하여 수량 산출
타일공사	• 타일압착붙임 : 보통인부(비빔) 삭제(건설표준품셈11-4)
기계설비	• 옥외배관공사 : 노무비(배관공, 보통인부, 용접공) 10% 감액 적용 ※ 건설표준품셈 기계 1-1-3 참조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부지내 각 공종간(건축, 토목, 조경) 토공항목 공통단가 적용
- 건설표준품셈(기계설비)에 의거 옥내, 옥외 배관공사 구분 적용

○○항교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전사청, 외삼문, 협문, 담당신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57,827	467,027	90,780	16.2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수리용덧집 → 외부비계+우장막
기초공사	• 거친돌쌓기(전사청 기초, 석축배수로공사) : 인력 → 기계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띠)살창호제작 : 창호(1/ww)일위대가 품 50% 감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8-3 기준 창호면적 대비산정 • 외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제작 : 일위대가 품 35% 감 - 창호설치 노무비 삭제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8-9 기준 창호면적 대비산정 • 협 문 : 창호설치 노무비 삭제
운반공사	• 진흙, 백토, 자연석 운반비 삭제(도착도)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문화재수리표준품셈상의 창호기준면적 대비 적용면적 비교 산정
- 견적서상의 운반비 도착도 여부 검토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연면적 2,289㎡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287,670	2,243,458	44,212	1.9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형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울타리 - 12개월 → 9개월
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파일 - 두부정리선 기준하여 산정(기초저면+50cm) - 파일박기(SIP공법) : 연암 → 풍화암
수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틀설치, 무대바닥틀설치 - 건축목공 0.075인, 보통인부 0.007인 • 목재섬유질흡음보드붙임(25T) - 내장공 0.09인/㎡, 보통인부 0.01인/㎡ ※ 건설표준품셈 12-6-3, 벽체(수장)합판붙임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콘크리트파일 시방서 및 도면의 파일길이 및 파일박기 토질 확인
- 공정표에 의한 가설공사 설치기간 산정

○○음성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복문지 문루, 음성 및 성벽보수정시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280,000	1,124,500	155,500	12.1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가설 : 12개월 → 10개월 ● 수리용덧집 → 우장막
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친돌쌓기, 해체 : 인력 → 기계장비+인력 조합 - 기단맞기초, 육축, 성곽, 음성
철근콘크리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거푸집 : 4회 → 6회(지하매설부분) - 기초공사, 육축공사
목공사 (문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부재, 포부재조립 : 높이 3.6 이하 적용(육축상부를 저점으로 적용)
지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마높이 3.6m 이하 적용(육축상부를 저점으로 적용) : 한식기와이기, 마루기와이기, 산자ړ기, 적심설치, 보토다짐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지붕공사 및 목공사 높이에 따른 가산적용 적합성
- 현장 여건 감안, 거친돌쌓기 기계장비 적용 검토

○○마을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퇴락가옥보수 등 25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542,636	2,454,565	88,071	3.46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덧집 → 우장막 - 기와, 초가 보수공사만 가설덧집적용(○○○안채 외 2동)
기초, 기단 석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기계(협소지역 일부제외) - 거친돌쌓기 및 해체, 채움석 쌓기 및 해체
벽체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석담쌓기(○○○ 곳간채) - 노무비 30%감액(벽체와 담장의 폭 치수차이에 따라 감액)
지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물청소 삭제 : 현장정리품에 포함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작업기간, 중요도, 보수여부 등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가설덧집 적용
- 토석벽체공사에 토석담쌓기와 비교하여 두께, 높이 감안한 품셈 적용

○○복지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연면적 1,38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50,810	1,365,195	85,615	5.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잔토처리 : 1,568㎡ 토목순성토 유용
지붕공사	• 시멘트기와잇기 : 지붕잇기공 0.03인, 보통인부 0.07인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60톤미만) : 난이도 적은구조 적용(철골공 4.23인/톤) • 부대철골가공조립 : 철골공 3인/톤
금속공사	• AL몰딩설치(W형) : 내장공 0.033인/m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사업장내 토목공사와 연계검토로 잔토처리량 절감
- 공사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승마장 조성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연면적 5,16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86,451	2,415,006	71,445	2.87%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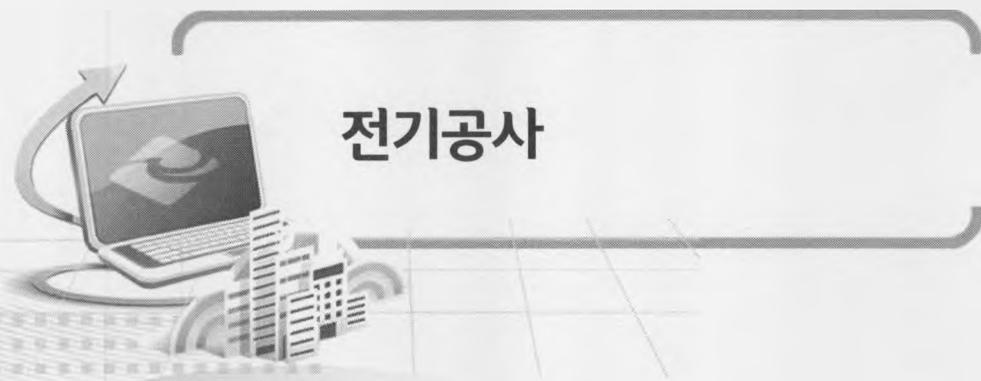
항 목	심 사 결 과
조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철물(SHB140L) : 노무비 삭제 ● 블록메쉬#8 : 노무비 삭제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철물제작설치(철제) : 보통 → 간단(원형승마장, 워킹머신) ● 부대철골가공조립 : 3인/톤
수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드위치판넬설치(벽, 지붕) : 잡재료비 3%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배관공사 : 노무비 30% 감액 적용(부설) ※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1-1-3참조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심사 착안사항

- 옥외배관공사의 부설여부에 따른 노무비 감액 적용
- 잡재료비 세부내역 미제시한 경우 건설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전기공사

○○문화벨트 조성사업 전기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옥외간선, 전등 설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67,784	235,015	32,769	12.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상형 경질 PE전선관 배선전공 품 적용 오류 - 0.024 → 0.016인 - 배선전공 11.5 → 8.1, 보통인부 81.1 → 71.1인
자재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터 절전시스템(카운트센스) 품목 단가조정 - 조당 100,000원 → 50,000원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심사 착안사항

-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 재료단가 적용의 적정성

○○ 장례식장 및 숙소증축공사(전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례식장, 기숙사, 본관전기, 태양광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58,361	585,610	72,751	11.0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급자재 단가 조정 → 가격정보 추가 비교 적용 - 0.6V/1kv 가교PE난연케이블(F-CV 1C 150mm) : 15,861원/m → 12,730원/m 등 124품목 • 자재단가 변경에 따른 부속품비 및 잡재료 수정 • 분전반 단가 상승 및 노무비 증가 반영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기구 : 사급 → 관급자재대 적용 • 태양광 발전설비 도급설치 → 관급설치 • 조명제어 도급설치 → 관급설치
기 숙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량계 21개 추가 • 조명기구 : 사급 → 관급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심사 착안사항

- 재료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한 단가 비교 검토
- 주요자재 조달청 관급구매로 전환

○○ 복지회관 건립공사(전기)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력 및 태양광 설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88,249	402,159	86,090	17.6%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단가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비교 수정 - F-GV 절연전선 : 16mm² 1,540원 → 1,509원 등 14종 감액 - F-CV 전력케이블(0.6/1KV) : 4C 16mm² 6,650원 → 6,783원 등 7종 증액 수정
관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발전설비 관급자 관급 단가 수정(22.4Kw-과다) - 조달청 나라장터 3자단가계약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심사 착안사항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적용 적정성
- 태양광발전설비 관급 구매

○○ 도로 전기공사

사업개요

- 사업량 : 가로등, 신호등, 교차로조명설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75,910	927,782	48,128	4.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사기간 3년을 전기 공사기간 1년으로 조정 적용 - 간접노무비 11.8 → 9.5%, 기타경비 6.3 → 5.8%
내역 및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단가 2012년 하반기 인상단가 적용 - 저압케이블전공 138,576 → 162,923원 등 10직종 • 조명설비 횡단보도용집중조명등 수량조정 81개 → 51개 (조도 상호 간섭, 중복구간 제외) • 잔여시간표시장치 삭제(이용자 및 도로분류 고려) • 도면과 산출서 등 내역 불일치 조정 - 교통신호제어기 기초 규격 : 600×600×800 - 가로등중공기초 : 500×820×685×900 • 조명제어반 분전반 조정 - 4회로 11개소 → 4회로 8개소, 2회로 3개소
자재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제어반 분전반(1면당) 조정 - 4회로 3,200,000원 → 4회로 2,560,000원, 2회로 2,400,000원 • 등기구 조정(세라믹메탈할라이드 → 고압나트륨) • 접지봉 3종 조달청 MAS 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심사 착안사항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의 적정성
- 현지 여건에 적합한 설계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적용 적정성



건설기술용역

○○펌프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과 업 량 :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68,400	656,770	111,630	14.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건설공사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현황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구성중 직접경비로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측량 보조인부: 건설보통인부 ⇒ 측량 협회 측부 • 노선측량대가 계상오류 수정
기본 및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비 요율 조정(1.4배 ⇒ 1.3배 적용)
토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구성중 직접경비로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시추조사 공당 총별 천공 수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갈층 3 ⇒ 1m, 모래층 5 ⇒ 8m, 연암층 2 ⇒ 1m • 실내시험 수수료는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한국품질 시험 수수료 적용 • 표준관입시험, 기계기구설치 일위대가(노임) 재산정 • 표준관입시험 65회 ⇒ 33회 조정(2.0m당)

항 목	심 사 결 과
사전재해 영향성검 토(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검 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작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사전해해영향성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지형 및 토질,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발생현황조사 항목 제외
도시계획 시설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 표준품셈 도시관리계획 기술료율 적용 - 30% ⇒ 25% • 임야, 초지관련 서류작성 항목 제외 • 보고서 인쇄비 재산정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조감도 작성 비용은 견적처리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설계 성과품 인쇄비 제외
손해배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계상

심사조건

- 정산대상항목 정산(토질조사, 시험수수료, 추정공사비)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 방재분야, 도시관리계획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현황 측량, 토질조사는 품셈구성상 직접경비로 제경비 및 기술료 제외 조치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과 업 량 : 전면책임감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964,000	1,613,700	350,300	17.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감리원수 보통의 공종 ⇒ 단순한 공정 적용 • 기술지원감리원 총감리원수에 15% ⇒ 10% 적용
제경비 및 기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경비 115% ⇒ 110% • 기술료 30% ⇒ 20% 적용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원 단가조정(75,608원 → 57,859원) • 공사부문 보통인부 → 제조부문 보통인부 적용
기타 추가업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경유 가격조정(1,888원 → 1,809원) -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평균가격('12년 10월)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8호)

심사 착안사항

- 현장사무원 제조부문 보통인부 적용 및 한국석유공사 지역별주유소 평균가격 검토

○○○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과 업 량 : 전통놀이 문화테마파크조성 1식
 낙동강 생태문화테마파크조성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90,870	1,257,300	133,570	9.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구성중 직접경비로 적용되는 항목은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현황측량, 토질조사
현황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 보조인부:건설보통인부 ⇒ 측량 협회 측부
토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질시험 횟수 조정 - 26회 ⇒ 4회 : 공당 1회 적용
공원계획 (근린, 주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비 재산정 • 전체조감도 비용은 견적처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항목 공원계획 자료 활용으로 제외(50%⇒0%) • 2012년 사유림벌채지도(매목조사) 수수료 징수기준 적용 •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재산정
경관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경관현황조사·분석 제외(20%⇒0%) • 부문별 경관계획 항목 제외(20%⇒0%)

항 목	심 사 결 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재산정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작업계획수립, 계획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항목 제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작업계획수립, 사업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항목 제외 •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지형 및 토질,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발생현황조사 항목 제외
교통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보정계수 적용 - 대상사업(사업), 지역별(교통권역), 약식교통영향 분석
손해배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0.336(분석-관람집회시설공사) • 부가가치세 계상

심사조건

- 정산대상항목 정산(공사금액, 토질조사)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 국토개발 표준품셈 공원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성검토 표준품셈
- 방재분야 표준품셈
-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 대행비용 검토
- 손해배상보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9호) 적용

심사 착안사항

- 공원계획 위한 각종 용역에 대하여 중복항목 검토
- 보정계수 적용 검토

○○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직성용역

사업개요

- 과업량 : 하천기본계획 1식 L=22.8k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27,200	788,480	38,720	4.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면적 수량 조정(영천댐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하천 유역면적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천, 백록천 100%, 자호천 50% 적용 • 일반현황, 수문조사 항목 보정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보정율 100% ⇒ 60% 적용
제경비, 기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경비, 기술료율 조정

심사조건

- 정산대상항목 정산(하천연장)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하천별 유역면적 신규 및 기존자료 검토

○○조성공사 전면책임통합감리용역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면책임통합감리용역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77,440	1,037,650	439,790	29.7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감리원 배치기준	• 감리원수 산정시 공사비 일괄적용 (숙박촌지구+클라이밍지구)
직접경비	• 사무원급료 : 75,608원 → 57,859원(제조부문 시중노임)
손해배상 보험료	• 부가가치세 산정
기 타	• 공사계약원가심사에 따른 공사비 변동시 정산요함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심사 착안사항

- 통합감리대상지구간 거리, 유사공종 여부 검토로 공사비 일괄적용 하여 대가산정

○○테마파크 건축설계용역

사업개요

- 사업량 : 건축설계용역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503,000	4,924,600	579,400	10.5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설계대가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교문화공원 3종(복잡) - 상급 → 중급(한국문화테마파크와 동일 적용)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전문가자문비 삭제 - 직접경비로서 설계요율적용 대가에 포함
손해배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 2011.12.8.)

심사 착안사항

- 도서작성내용 및 양에 따른 대가요율 적용
- 설계대가 요율적용시 업무범위 검토



학술연구용역

△△시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규모 : △△시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97,783	179,676	△18,107	△9.15%
노 무 비	132,180	130,097	△2,083	△1.58%
경 비	39,061	30,042	△9,019	△23.09%
기 타	26,542	19,537	△7,005	△26.39%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경비조정
 - 여비 출장 횟수 조정, 유인물비 단가조정
 - 전산처리비 단가 및 수량 조정
 - 회의비 단가 조정, 교통 통신비 조정
- 일반관리비 효율 조정 : 5% → 2%(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발주시)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673	136,509	△13,164	△8.80%
노 무 비	85,572	83,141	△2,403	△2.84%
경 비	56,974	46,868	△10,107	△17.74%
기 타	7,127	6,500	△627	△8.80%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연구원 참여율 조정
- 경비 조정
 - 보고회 참석횟수 조정, 대상지역 현지실사 횟수 조정
 - 유인물 산출내역서 실사 조정
 - 재료비 산출내역서 조정
 - 회의비 산출, 교통/통신비 산출내역, 조사비 산출 조정
- 직접인건비의 적용을 조정에 따른 제경비, 부가가치세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시설, 하천수 모니터링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실
- 사업규모 : 배출착감시설, 하천수 모니터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34,730	129,418	△5,312	△3.94%
노 무 비	26,325	25,443	△882	△3.35%
경 비	82,721	79,305	△3,416	△4.13%
기 타	25,684	24,670	△1,014	△3.95%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연구보조원 조정
- 경비 조정
 - 양식장 채수 횟수 조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채수 횟수 조정
 -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기준 적용, 환경부 고시 제2010-154호(2010.12.27)
 - 전산처리비(감가상가) 단가 조정
 - 유인물 단가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심사 착안사항

- 작성요령, 산정기준, 관련규정 적용 여부 등

△△ 사 발간 연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각 1,500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09,941	103,413	△ 6,528	△ 5.94%
노 무 비	52,869	48,827	△ 4,042	△ 7.64%
경 비	51,837	49,662	△ 2,175	△ 4.20%
기 타	5,235	4,924	△ 311	△ 5.94%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을 조정
 - 각 과제별 과업수행원의 등급별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조정(공무원 여비규정)
 - 진도 보고횟수 조정 감
 - 유인물비(중간, 최종보고서) 조정
 - 표지 인쇄 : 13매 → 5.5매 [7.5매 감(코팅 5매, 1색도 2.5매)]
 - 운영비 조정 - 외래강사 수당 : 일반(가) → 일반(나)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 지급 규정
 - 회의비 단가 조정, 교통 통신비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05.3.4) 및 거래실례가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2012.3.15.)

○○ 고분 장기 보존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규모 : ○○고분 장기 보존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80,000	141,103	△38,897	△21.61%
노 무 비	111,559	81,644	△29,915	△26.82%
경 비	62,213	56,692	△5,521	△20.39%
기 타	6,228	2,767	△3,461	△55.58%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을 조정
 - 제7과제 : 종합보고서 발간
- 경 비
 - 여비산출 : 소요일(횟수) 조정
 - 유인물비(최종보고서) 조정
 - 전산처리비 조정, 회의비 조정, 교통 통신비 조정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온·습도 시설설비, 연구용 재료비 부가가치세(10%) 가산적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조정
 - 원가계산의 경비 산출방법 변경 : 직접노무비법 → 직접원가법
 - ※ 한국은행발표(2011.7.29) “2010년 기업경영 분석결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 제조원가명세서참조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친화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친화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76,951	160,194	△ 16,757	△ 9.47%
노 무 비	109,248	102,620	△ 6,628	△ 6.07%
경 비	59,276	49,946	△ 9,330	△ 15.74%
기 타	8,426	7,628	△ 798	△ 9.47%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연구원 참여율 조정(제1, 2, 3, 4과제)
- 경 비
 - 예비산출내역서 조정
 - 해외여비 식비(기내식) 조정
 - 책임연구원 숙박료 223\$ → 190\$, 연구원 숙박료 176\$ → 150\$
 - ※ 공무원 여비 적용(우리도 적용기준인 할인 정액으로 산정)
 - 회의비 산출 조정
 - ※ 경상북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회의 2시간 이내)
 - 조사비 조정
 - ※ 2012년 지역별고용조사(도급조사원)은 단가, 통계청 자료참고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에너지 △△플랜트 실시계획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에너지 △△플랜트 실시계획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031	139,851	△9,180	△6.16%
노 무 비	120,849	116,234	△4,615	△3.82%
경 비	21,085	16,957	△4,128	△19.58%
기 타	7,097	6,660	△437	△6.16%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1, 2, 3, 4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 인원 및 횟수 조정
 - 전산처리비(토너) 단가 조정
 - 연구용 재료비(복사용지) 단가 조정
 - 교통 통신비(팩스)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분야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분야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29,749	118,553	△ 11,196	△ 8.63%
노 무 비	88,446	84,626	△ 3,820	△ 4.32%
경 비	35,125	31,603	△ 3,522	△ 10.03%
기 타	6,178	2,324	△ 3,854	△ 62.38%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3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 출장일수 조정
 - 재료비 단가 조정
 - 회의비(자문회의 횟수) 조정
 - 교통 통신비(전화요금, 우편료, 팩스요금) 조정
 - 조사비 조정(설문조사)
 - ※ 2012년 지역별고용조사(도급조사원)은 통계청 자료 참조
 - 일반관리비율 조정
 - ※ 일반관리비율, 5% → 2%(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발주하는 학술 연구용역)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설립사업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99,362	181,720	△17,642	△8.85%
노 무 비	142,227	134,309	△7,918	△5.57%
경 비	47,642	43,848	△3,794	△7.96%
기 타	9,493	3,563	△5,930	△62.47%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제2, 4, 5, 6, 7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 출장인원 조정
 - 국외여비 숙박비 할인정액기준으로 조정
책임연구원 \$160 → \$136, 연구원 \$137 → \$116
 - 재료비(사무용품) 단가 조정
 - 회의비(자문회의 횟수) 조정
 - 일반관리비율 조정
※ 일반관리비율, 5% → 2%(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발주하는 학술 연구용역)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일반용역

△△ 문화재 표본 및 시발굴 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사
- 사업량 : 표본 59,572m², 시굴 95,502m², 발굴 963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간(실조사일수 78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표본 시·발굴 조사	423,060	383,630	△39,430	△9.32%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 산출일수 및 주휴수당 일수 소수점 이하 절사
 - 직접경비
 - 현장인부 산출일수 소수점 이하 절사
 - 기자재 수송비외의 수송비,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비 삭감
 - 굴삭기 임차료 조정(물가정보지)
 - 조사재료비 및 소모품비 : 전적가, 물가정보, 실거래가 적용
 - 기타 항목 : 타 용역 수준으로 조정
-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 참고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복원사업 부지 정밀발굴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규모 : 시굴 690m²
- 사업기간 : 2012. 6 ~ 2012. 12(실조사 일수 63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정밀발굴 조사	299,563	263,824	△35,739	△11.93%

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
 - 현장인부임, 정리 및 보고서 인부임
 - 현장인부임 : 수량조정(13인 → 10인)
 - 4대보험요율 9.475% 적용, 퇴직적립금 삭감(용역기간 1년 미만)
 - 컨테이너 운반비 및 현장인력 수송비 삭감
 - 굴삭기 임차료 조정(물가정보지)
 - 주재비 50% → 40% 조정
 - 기타 항목 : 타 용역 수준 등으로 조정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 참고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규모 : 15,668ton(폐콘크리트 15,668)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357,800	339,180	△ 18,620	△ 5.20%
운 반 비	79,285	104,662	25,377	32.01%
처 리 비	245,988	203,684	△ 42,304	△ 17.20%
기 타	32,527	30,834	△ 1,693	△ 5.20%

□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사업장과 인근 폐기물처리 업체(3업체)의 거리를 평균산출하여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 적용
 - 기계경비외의 산출경비금액 삭감
- 처리비 : 자체 처리 기준단가 적용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규모 : 10,415ton(폐콘크리트 5,784, 폐아스콘 195,
혼합폐기물 5% 3,284, 불연성 95% 1,152)
- 사업기간 : 2012. 2. ~ 2015. 2.(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395,014	313,045	△81,969	△20.75%
운 반 비	85,966	79,472	△6,494	△7.55%
처 리 비	273,138	205,115	△68,023	△24.90%
기 타	35,910	28,458	△7,452	△20.75%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품셈 단가적용
 - 혼합폐기물, 불연성폐기물 : 최저 견적가 적용
- 처리비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자체기준 단가적용
 - 혼합폐기물, 불연성폐기물 : 최저 견적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 2011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장 ○○화사업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소 ○○과
- 사업내용 : 관내 지방도 및 국지도 22개 노선(357.813km)
도로대장 전산화 및 사업물량구간의 영상제작
- 사업기간 : 2012. 10. ~ 2013. 1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1,192,400	1,139,700	△52,700	△4.42%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측량, 대장조서작성, 기준점측량 - 측량대가의 기준 적용 ○ 도면제작편집, 구조화편집, 시범사업DB변경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적용 ○ 보통인부 - '12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 도면인쇄 및 보고서 - 견적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2.1.12)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8호)

○○시설물 ○○화사업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실
- 사업면적 : ○○군 일원 12.5km²(도로, 상수도, 하수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2,030,000	1,981,435	△48,565	△2.39%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801,048	1,756,899	△44,149	△2.45%
성과심사비	44,406	44,406	-	△0%
부가세	184,546	180,130	△4,416	△2.39%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기준점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 측량대가의 기준 적용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구조화편집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적용 ○ 플로터용 잉크값 155,000원으로 조정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_52호)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8호)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1,031,058㎡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118,260	1,100,330	△17,930	△1.60%
환경영향평가	721,380	707,960	△13,420	△1.86%
교통영향평가	198,000	192,610	△5,390	△2.27%
에너지사용계획	198,880	199,760	880	0.44%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 통	○ 2012년 상반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환경영향 평 가	○ 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 산지관리법 적용 ○ 주민의견수렴외 4개항목 - 가중치 60%적용 ○ 요약 및 부록 작성 - 가중치 40%적용 ○ 동식물조사 전문가 인건비 삭감	
교통영향 평 가	○ 현장조사 개소수 조정 ○ 자료정리 및 코딩 인력 20%로 조정	
에너지사용 계 획	○ 보조요원 인원 41명으로 조정 ○ 작업량계수 1.19로 조정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08-842호)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국토부고시 제2008-841호)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자부고시 제2004-61호)

△△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L=4.75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환경영향조사	1,767,700	1,709,752	△57,948	△3.28%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 건 비	○ 2012년 상반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직접경비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조사 수량조정 - 공사시 12회 → 8회(특별과업지서 수량참조) ○ 출장비 조정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조사 출장횟수 조정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보호수 통합관리 GIS시스템 구축 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내용 : 웹기반 보호수 현황 및 보호수 지정·해제신청 등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보호수 통합관리 GIS시스템	194,138	171,839	△22,229	△11.49%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보호수 통합관리 GIS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3,000원 → 2,000원 적용 ○ 전산처리비 수량 11대 → 8대 조정 ○ 이윤 10%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2.2.24)

△△관리 민간위탁 용역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원
- 사업내용 : 전시포지관리
(제초 및 육림·분재·야생화관리, 병충해방제, 환경관리등)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170,000	195,576	25,576	15.04%
인 건 비	116,694	138,773	22,079	18.92%
경 비	17,158	15,210	△1,948	△11.35%
일반관리비	6,644	7,650	1,006	15.14%
이 윤	14,050	16,163	2,113	15.04%
부가가치세	15,454	17,780	2,326	15.05%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전시포지 시설물 및 하우스 일반관리, 작업반장
 - 시설물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에 준하여 인건비 산정
- 경 비
 - 산재 보험료 : 전시포지관리 및 시설물관리 분리적용 시설물관리의 경우 2.0% 적용

- 고용 보험료 1.35% → 0.8% 적용
- 임금채권보장보험 0.04% → 0.08% 적용
- 안전관리비 2.48% → 0%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미포함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 환경보전비 0.3% → 0%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적용대상에 미포함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기 타

- 인건비 및 경비 조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조정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2012년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도급비 참조
- 2013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작업종별 산정내역 참조



물품구매·인쇄

△△ 리모델링 제작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사업장
- 사업규모 : 제작·설치 30대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리모델링 제작	214,708	199,632	△15,076	△7.02%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단가 및 간접재료비 효율(잡재료 및 소모재료) 감 5% → 2%
 - 노무비 일부 및 간접노무비 효율 감 10.5% → 9.5%
 - 경 비
 - 운반비 조정 : 운반거리 및 운행시간 조정
 - 재료비 노무비 변경에 따른 경비 조정
- 경비=계약목적물의(재료비+노무비)× [결산서의 경비÷(재료비+노무비)]
- ※ 한국은행발표(2011.7.29) “2010년 기업경영 분석결과”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 한국은행발표, “2010년 기업경영분석결과”(2011.7.29)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작업중 작업부산물(고철 등)은 감 조치 발주
- 산출내역서 중 단위가 SET, 1식인 경우 발주 부서에서 재검토 후 발주

축분처리용 ○○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톤백 단위 △△톤
- 규 격 :
 - 소나무 등 양질의 목재(입자 10mm 이하)로 수분함양 10% 이하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축분처리용 △△ 구입	63,800	54,000	△9,800	△15.36%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 운송료, 하차, 적재비 등 제경비 포함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실험실 ○○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연구원
- 사업규모 : 실험실 △△물품 33종 230점 구매
- 규 격
 - △△제조사 외 5개 업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실험실 △△ 구입	40,349	36,307	△4,042	△10.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33종 전 품목 가격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물품 세트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조립물품 800점, △△물품 120점
- 규 격
 - 내 · 외경(66cm, 96cm), 연결관 등 5개 물품 조립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조립)물품 구매	50,000	48,240	△1,760	△3.5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조립완성품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조립물품 1.72% 절감, △△물품 26.67% 절감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장비 임차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임차일로부터 사용 120시간 또는 12개월 선도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사유 :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임차 장비의 국산대체 불가능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장비 임차	259,133	247,937	△11,196	△4.32%

주요 심사내용

- 심사품목
 - 시간당 단가(신품가 사용연한 대비), 재생수리비, 1회 적용
- 환율조정 : 1,150원/달러 ⇒ 1,125달러(심사시점 기준)
- 이자비용 금리조정 : 7% (수의계약 당사자사내대출 금리)
 - ⇒ 5.86% (한국은행 기업대출 금리)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검사용 물품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검사용 물품 64종 293점 구매
- 규 격
 - △△제조사 외 10개업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검사용 물품 구입	36,917	32,995	△3,992	△10.6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0.01NH₂SO₄ 외 36종 품목 가격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연구장비 설치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 연구장비 1식
- 규 격
 - △△세척기 등 8개 공정시스템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연구장비 설치	120,000	109,020	△10,990	△9.16%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연구공정 시스템 설치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장비세트 등 5개 장비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약품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연구소
- 사업규모 : △△ 약품 등 71종
- 사업목적 : 시민복지 향상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약품 구매	35,379	27,365	△8,014	△22.65%

주요 심사내용

- 보건복지부 의약품 고시단가 및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71종 전 품목 가격 조정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물품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의료원
- 사업규모 : △△물품 외 47종
- 사업목적 : 시민복지 향상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물품 구매	110,918	77,408	△33,510	△30.21%

심사내용

- 발주부서 견적 2개 업체 및 심사부서 견적 3개 업체 중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
※ 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소모품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의료원
- 사업규모(3개사업)
 1. 김서림방지마스크 외 83종
 2. 채혈용주사기 외 17종
 3. Trachostomy tube 외 29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김서림방지 마스크 외 83종	59,334	51,098	△8,236	△13.88%
채혈용주사기 외 17종	55,258	52,417	△2,841	△ 5.14%
Trachostomy tube 외 29종	30,765	22,221	△8,544	△27.77%

주요 심사내용

- 인터넷 쇼핑몰 가격조사 및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시스템 서버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의료원
- 사업규모 : 스토리지 외 5개 품목
- 신규 구축 및 증설, 기술지원 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시스템 서버 구매	78,925	65,729	△13,196	△16.7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단가) 적용
- 발주부서와 논의 후 기술지원료 삭감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장치 이중화 구축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장치 이중화 구축 (6개소)
- 계약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장치 이중화 구축	94,875	86,200	△8,625	△9.14%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2011. 5.31)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인쇄물 발간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20,000부(총 4,000,000면)
- 규 격 : 16절, 양면 책자형식
 - 표 지 : 2면, 칼라 2도, 백상지 80g
 - 내 지 : 신문용지 54g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인쇄물 발간	117,606 (29.4원/면)	106,000 (26.5원/면)	△11,606	△9.87%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에 의한 원가산출 및 인쇄업체 견적이 비교하여 최저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2011.5.31)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05. 3. 4)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분석장비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시험소
- 사업규모 : △△분석장비 1세트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분석장비 구매	150,000	120,780	△29,220	△19.48%

주요 심사내용

- 조달가 및 시증거래가 없어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군 자체심사 사례

○○도로 확·포장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가로등 설치 18본, 가로등 제어반 2개소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18,131	113,641	4,490	3.80%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원가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12.7% → 11.5% • 산재보험료 3.6% → 3.7%(제비율적용기준 '12.01.03)
내역서·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지선, 접지동봉 삭제(기로드등기초동판과 중복)
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강하 계산을 고려한 케이블 선정 규격이 과다하게 적용됨 : KS C IEC60364-5-52 참조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재(가로등주) 처리비용 사전공제(품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기설치비 삭제(품5-26 해설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찰단가 수정(견적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지선, 접지동봉 삭제(기로드등기초 동판과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스 카바 삭제(등주 지하매립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기 점멸기 2개 → 1개(노출시설물 최소화) • 램프, 안정기 2개 → 18개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완충녹지2 → L=183m, B=10m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17,000	198,900	18,100	8.3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흙관접합	• 흙관접합(400mm) : 품셈(19-1-나) 적용
가설공사	• 가설창고 : 경비적용(경비항목임)
자재단가	• 점토블럭 : 890원/장(부가세 불포함) → 610원/장(부가가치세 포함)
	• 평의자 : 280,000원(부가세 불포함) → 280,000원(부가세포함, 현장설치도)
	• 트윈워밍맘 : 2,386,000원(부가세 불포함) → 1,577,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트리플트위스트 : 2,866,000원(부가세 불포함) → 1,814,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스텝싸이클 : 2,236,000원(부가세 불포함) → 1,488,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시설물공	• 시설물 설치비용 삭제 (현장설치도 가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하수관거설치 (우수BOX 1.5*1.0 L=200.0m)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98,790	265,850	32,940	11.0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되메우기 - 기계 100% 적용(상주시 설계기준) • 잔토처리 - 흙단위중량 1.8 → 1.6ton/m³ 적용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적재 - E=0.35 → 0.45 적용 • 보조기층운반 - 덤프트럭 15ton → 24ton 적용 • 보조기층재 운반, 가설창고 - 일괄 경비 적용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타설 인력 → 펌프카 • 철근가공 현장 → 공장 • 합판거푸집 인건비 1회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틀목공 0.3인 → 0.22인 - 보통인부 0.25인 → 0.12인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 배양실 건립공사(전기)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전력간선, 전등, 전열, EHP 전원공사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증가액	증가률
117,053	122,358	5,305	4.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009 : 포장실, 자재창고, 기계실, 창고, 실험실, 사무실, 휴게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제2011-154호) - FL 2/32W로 되어 있는 장소의 조명형식을 신설건물에 기존 조명적용 구역을 고효율 조명기구(LED) 적용 검토
공량산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량산출서의 전선관 및 전선류에 대하여 단위공량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 예1) F-CV 1C*4 240mm² 4열 796m 단위공량을 전품 5-11에 케이블전공 0.136인/m×796m=108.256인므로 되어 있으나 4열동시 배열 계산은 340%인/m로 적용하여야 함. 계산결과 : (796m/4열)×0.4624인 = 92.018인 - 예2) 전선관 ELP 125mm 3열 599m 단위공량을 전품 4-31에 케이블전공 0.016인/m×599m=9.584인므로 되어 있으나 3열동시 배열 계산은 260%인/m로 적용하여야 함. 계산결과 : (599m/3열)×0.0416인 = 8.306인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단가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 조달단가 변경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나라장터 자재단가 변경이 되어 변경분을 적용함이 적절함(단가조회일 : 2012.04.05). - 물품식별번호 22146878 : 220,000원 → 191,400원
전압강하 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 및 전등, 전열, EHP 등 부하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수용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부하전류 계산 결과에 따라 케이블과 차단기 등의 용량을 재선정
조도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축물의 각 실에 필요 조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이 된 것을 각 실의 용도에 맞게 필요 조도 재계산 및 등수를 재 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주변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동재건립, 부지조성 및 석축설치, 바닥 마사토 포장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51,351	138,510	12,841	8.4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단가산출	• 개정품셈적용(문화재청고시 제2012-57호)
마사토포장	• 서재건립예정지 포장삭제
가시설	• 덧집 및 작업장 삭제(우장막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문화재수리표준품셈(문화재청고시 제2012-5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지역 녹색길 조성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녹색길 조성 2개소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60,990	271,220	189,770	41.17%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10.6% → 10.2%, • 기타경비 6.2% → 5.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 → 1.24%(관급자관급 제외)
토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때 → 초류종자살포 • 순성토운반 15km → 5km • 잔토처리 → 순성토 유용 • 집수정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 자재 가격정보(조달청) 적용 : 레미콘, 철망, 정화조, PE관 등(나라장터 가격 참조)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정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 데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형강 잡철물제작설치 → 철골공사 적용 (철골가공조립+철골세우기+볼트조임, 건축품 제7장) - 바닥 : 마루밀창 또는 데크설치, 장선 : 마루널깔기 - 데크자재(내구성 확보되는 자재로 검토) - 초화류 가격조정(견적서 및 나라장터 참조)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비 경비로 산출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정비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과
- 사업량 : △△합류점, L=8Km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8,988	204,821	44,167	17.7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설계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설명서에 내용중에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제작시방서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설계설명서에 불필요한 내용이 다수 있음.
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시설의 검사 및 시험과 기기설치, 케이블 및 케이블보호물류, 접지공사, 지중선공사, 인입공사 등의 상세 시방서 내용이 없음. • 제작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의 경관조명기구 구성 제원표와 재질 및 적용기준이 상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관공사시 “노출되는 배관의 자재는 1.5m이내 마다 하여야 한다”에서 “고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선공사시 금회에 옥내 구간은 없으며, 사용하는 케이블은 도면 작성이 “CV전선”이 아닌 “F-CV전선(난연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음. • 시방서 전체의 내용에 중복되면서 상이 및 금회 공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음.

항 목	심 사 결 과
설계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설명서에 내용중에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제작시방서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설계 설명서에 불필요한 내용이 다수 있음.
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시설의 검사 및 시험과 기기설치, 케이블 및 케이블보호물류, 접지공사, 지중선공사, 인입공사 등의 상세 시방서 내용이 없음. • 제작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의 경관조명기구 구성 제원표와 재질 및 적용기준이 상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관공사시 “노출되는 배관의 자재는 1.5m이 내 마다 하여야 한다”에서 “고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선공사시 금회에 옥내 구간은 없으며, 사용하는 케이블은 도면 작성이 “CV전선”이 아닌 “F-CV전선(난연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음. • 시방서 전체의 내용에 중복되면서 상이 및 금회 공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음.
원가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서와 총괄집계표의 산출경비 금액이 상이 (간접노무비 : 과다적용, 산재보험료 : 과소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비율 적용이 되지 않았음. •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공사 성격상 제비율 적용 제외 항목임.
총괄집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서 내용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총괄집계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등의 설계서의 각종 서식을 동일한 서식으로 사용 • 경관조명 설치 설계서와 가동보 전기인입공사 설계서의 각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등을 분리 구성 상태로 상기 2개 설계서를 세부 항목별로 취합하여 1개 설계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 경관조명 관급자재는 재료비로 노무비 항목에 있음. • 전기공사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소계 항목을 추가

항 목	심 사 결 과
관급자재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 내역서의 구성 항목 전체가 단가조사서에서 적용단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로 소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가 2회 적용으로 감. (원가계산서 : 부가가치세 2번 적용된 금액임.) • 관급자재를 내자구매(총액) 요율로 수수료가 적용이 되어 있으나 조달청 제3자단가 품목으로 조달수수료요율 적용을 제3자단가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경관조명설치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계산은 수량산출서에서 재료에 대한 할증이 적용 되지 않은 수량으로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나 할증이 포함된 수량으로 노무비가 계산이 되어 있음. (내역서 전체 재료가 모두 노무비 계산이 잘못되었음.) • 전선관 및 케이블의 노무비 산출시 2열 이상 동시 포설에 대한 노무비 적용을 구분하여 노무비 산출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량에 1열 포설 단위공량이 적용되어 있음. - 전품4-31 해설④ 및 전품4-34 해설③
경관조명설치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위대가(기초) 제1호표에서 경고테이프 재료비 산출 근거가 없음.
경관조명설치 (기초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분전함 기초대 기초산출에서 접지봉 규격이 도면의 규격과 상이함.
경관조명설치 (단가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 단가조사서에서 나라장터 제3자단가 품목중에 도면과 시방에 만족하는 모든 단가를 조사후 단가비교 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함이 타당함.
경관조명설치 (수량산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및 전선관 산출거리가 전압강하계산서의 케이블 산출거리와 상이함. • F-CV 25mm²×2C와 F-CV 35mm²×2C의 수량 산출이 도면과 각 계산서와 상이하며 산출이 적절하지 않음. • 한전인입~LP-A,B,D 구간의 관로굴착 및 전선관은 한전 전기인입 공사에 경관조명 제어반 인접지점의 전주에서 지중으로 인입함으로 거리 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음. • 경관조명 등기구에 대한 개별접지 수량산출 누락되었음.

항 목	심 사 결 과
가동보전기인입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보의 내역서에 전기 가공인입 116m에 대하여 한전 전기인입 표준공사비에 포함하여 해당 항목을 도면 수정과 내역서에서 삭제하여야 함. - 가동보 전력량계 인접지점 인입전주까지 한전 전기 인입 표준공사비(200m 이내)에 포함이 가능함. - 현재의 방법으로 공사시 인입전주 관리주체가 한전 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상주시 관리주체가 됨.
가동보전기인입 (산출근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번 심사결과 및 의견”에 따라 산출근거서에서 인입 전주까지 116m(20+46+50)에 해당하는 산출내용이 한전 전기인입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산출근거서에서 삭제하여야 함. • 3개보 인입전주에서 전력량계까지 도면상 기준으로 거리 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음.
참고자료 (각 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에 대한 조도계산서가 없음. • 가동보 전기인입에 대한 전압강하계산서, 인입간선 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각종 계산서가 없음. • 경관조명 인입간선계산서의 부하계산서와 인입간선 계산서의 $\Sigma i(A)$ 계산 결과값에 따라 인입간선계산서 계산 및 적용 단면적 계산과 적용이 잘못되었음. - 예) LP-D 및 LP-E 등 - 계산 및 적용 결과에 따라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수정이 되어야 함. • 경관조명 부하계산서에 부하명에 “MH”를 “CDM”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경관조명 부하계산서에 “S.P”가 도면의 상시 및 격등을 구분하여 “S.P” 비고란에 표기가 필요함.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범례 및 기호표기 도면이 없음. • EE-00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2번 심사결과 및 의견”에 따른 도면수정 - 인입지점 인입전주~전력량계까지 인입거리 표기 • EE-007~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경관조명 배치평면도를 KEY MAP 위치 표기

항 목	심 사 결 과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013~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설비 평면도의 상시 및 격등 표시가 구분이 되지않음. - 경관조명 각 등주 구간별로 1~3열 동시 포설이 구분이 되도록 CABLE SCHEDULE 기호 표시 - CABLE SCHEDULE의 기호표시 동일하게 수정 - 해당 경관조명 배치평면도를 KEY MAP 위치 표기 • EE-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D에서 LP-C 및 LP-E PNL 분기표시 추가 • EE-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PLATE와 ANCHOR 도면에서 ANCHOR 규격이 BASE PLATE 규격 불일치 여부 재확인 - 경관조명 기구 구성 제원표와 도면의 ANCHOR 규격이 상이함. • EE-020, 022, 024, 026, 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용 안테나” 문구 수정 및 위치 설명선 추가 - 지주대 사양과 기초도의 ANCHOR 규격이 상이함. • EE-021, 023, 025, 027,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및 격등, S.P회로 구분을 위한 부하계산서의 CIRCUIT NO. 표기를 하여 회로도 단자대에 표기 - 경관조명 분전함 내부회로도의 케이블 번호 표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구성 순서에 맞게 설계도서 편집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량 : 5개면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식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0,000	93,146	6,854	6.8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경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충당금 전액감(과업수행기간 1년미만) • 자문위원수당 조정 150,000원 →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자문위원 교통비 별도) • 연구과제별 연구인력, 참여율 등의 적정여부 검토(하향 조정) • 사업대가기준 조정당 20,000원 → 15,000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장소임대비(공공기관 회) - 회의경비(식비, 다과/음료) 1인의실 활용 등) 및 인원수 정산 철저 - 회의비(중간보고회) 횟수조정 • 일반관리비 조정(정부출연기관 수의계약 대상시)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2011-7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시가지 취수시설 및 ○○설치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량 : ○○면 일원, 설치공사 1식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7,000	344,000	3,000	0.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원가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제부금비 2.3% 적용 • 환경보전비 0.3% → 0.5%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적용
내역 및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 철근운반량 수정 1.874Ton → 0.855Ton(고제처리별도) • 내역 및 수량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공구(기계설치공사) 밸브류설치 - 2공구(관부설공) 음착식접합부설, PE관 이형관접합(D50), 소형고압블럭설치 - 3공구(아스팔트, 골재대) 아스팔트유제(RSC-4), 혼합쇄석 - 관급자재(관자재) 수도용폴리에틸렌관(D63)

<p>일위대가 및 단가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표) PE관 접합및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공 0.0033인 → 0.003인, 보통인부 0.004인 → 0.00367인 • 제2호표) PE관 이형관접합(나사조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공 0.04인 → 0.036인, 보통인부 0.048인 → 0.044인 • 제6호표) GRP맨홀 설치 및 제11~13호표) 품재산정 • 제42, 43호표) 품재산정 • 25. P.P마대쌓기 및 헐기 → 톤마대 및 P.P마대쌓기 및 헐기로 구분 적용 • 사전행정절차 이행 철저
------------------------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발전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량 : 모듈 1식, 인버트 1식, 모니터링 1식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27,794	321,964	5,830	1.7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12.7% → 10.5% 적용 • 기타경비 5.2% → 5.4%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반영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인력비빔타설(무근) : 보통인부 0.99인 → 0.82인 콘크리트공 0.87인 → 0.85 • Con'c인력비빔타설(1:2:4) 및 합판거푸집 3회 품 재산정 • 소형고압블럭 철거 및 채포장 재산정 • 배관용 구멍뚫기 : 특별인부 → 할석공 적용 • Con'c철거 및 복구 재산정 • 접속반실설치 : 철재조립식가설건축물설치 일괄경비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수도시설 개량사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량 : 상수도관로부설
 - 관로공 : 배수관로 (PE-D75~50) L=1,555m, 관보호공 L=106m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04,890	196,370	8,520	4.1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적용 : 0.07% • 관로공 : 관접합 및 부설(PE수도이층관접합및부설D50) 765m → 755m 적용 • 부대공 : 오탃방지망 : 수량 및 내역 상이(4Span → 5S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관보온철거 및 석축운반(수량 등 근거 첨부) • 사급자재대 : 골재원별 가격 및 운반거리 등 상호비교하여 내역 적용 •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8,9호표(PE수도이층관접합및부설) : 구구경을 신구경으로 표기 - 제10호표(플랜지접합) : 배관공 0.05인 → 0.04인 적용 보통인부 0.05인 → 0.03인 적용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리스형 돌망태헐기(H=30cm) • 망태해체 : 특별인부 0.004인 → 0.006인 적용 보통인부 0.007인 → 0.01인 적용 • 채움석해체 : 특별인부 0.013인 → 석공 0.027인 적용 보통인부 0.064인 → 0.004인 적용 - 매트리스형 돌망태설치(H=30cm) • 조립설치 : 특별인부 0.004인 → 0.006인 적용 보통인부 0.007인 → 0.01인 적용 • 돌 채 움 : 특별인부 0.013인 → 석공 0.027인 적용 보통인부 0.064인 → 0.004인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상수도 관로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량 : 상수도 관로 부설
 - 관로공 : 송수관로 (DCIP-D100) L=1,503m, 배수관로 (PE-D75) L=703m
 - 구조물공 :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28,400	347,000	24,962	5.8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비(상수도) 적용 : 0.3% → 0.5% •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압장울타리설치(휨스설치) 메쉬휨스 - 16경간 → 10경간 울타리 2개소 → 1개소로 조정(내역 및 수량 상이)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포장 :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상 적용 상이 - 프라임코팅(MC-1:75 ℓ /a) → RSC-3으로 조정 • 관접합 및 부설(송수관로, 배수지 구내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수변접합 및 부설(φ 100mm) 1개소, 주철관절단(D80) 4개소 삭제 - 제수변보호공 5개소 → 9개소, 관로테이프 1,116m → 1,152m 적용 - 플랜지접합(D75) 2개소 추가 • 부대공(관로표시못) 29개소 → 20개소 적용 • 사급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쇄석 골재단가 13,200원 → 8,000원 적용 - 수동용소프트실제수밸브 (D80~100) 5개소 → 6개소 적용

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소켓곡관A 4개소, 플랜지관(D100) 2개소, 소켓플랜지T형 관B 3개소 삭제 - KP접합부속(D100) 692조 → 698조, (D80) 2조 → 5조 - PE수도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 : D90) 720m → 703m • 일위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표(시멘트액체방수) : 방수공 0.1인 → 0.09인(바닥), 0.07인(벽) 적용 보통인부 0.08인 → 0.05인(바닥), 0.04인(벽) 적용 - 제29호표(제수변접합및부설) : 배관공 0.14인 → 0.12인 통인부 0.14(인) → 0.18인, 크레인(삭제) - 제30호표(제수변접합 및 부설) : 배관공 0.14인 → 0.1인 보통인부 0.14(인) → 0.15인, 크레인(삭제) - 제31호표(주철관절단) : 운전사(기계) 0.09인 → 0.06인 보통인부 0.21(인) → 0.24인 - 제32호표(주철관절단) : 운전사(기계) 0.08인 → 0.06인 보통인부 0.2(인) → 0.22인 - 제33~34호표(플랜지접합 D100~80) : 인부임 재검토 - 제54호표(PE수도이층관접합 및 부설) : 구구경을 신구경으로 표기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과
- 사업량 : 관로공
 - 배수관 : 당초 (D75~100) L=4,297m → 변경 L=5,940m
 - 급수관 : 당초 (D25~50) L=1,601m → 변경 L=1,822m
 - 가정분기관 : 당초 (D16) L=1,607m → 변경 L=2,305m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증가액	증가률
864,151	1,073,300	934,400	12.9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내역 및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터파기(백호0.2), 모래부설(백호0.2), 포장절단 - 내역 및 수량상이 • 관로공 : 급배수관 및 가정분기[PE수도관접합부설(D50, D25), HI-3P 이형관접합(D100, D75), 나사접합및부설(D16), 관로 표시테이프 설치] - 내역 및 수량 상이 • 구조물공 : 가압장(제수변보호통설치) 내역 및 수량상이 • 사급자재대 : 6.4 플랜지 및 플랜지단관 내역 및 수량상이, 6.4 아스팔트유제 MC-1 → RSC-3 적용 • 수량산출서 집계오류부분 일부 수정 및 근거첨부

□ 심사근거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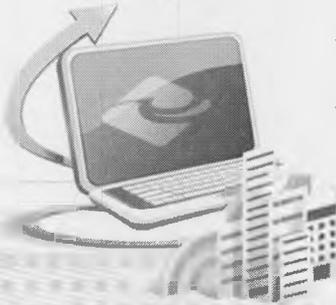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부록

- 0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0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12-15 규칙 제 2605호
 (일부개정) 2010-06-21 규칙 제 2656호
 (일부개정) 2011-09-26 규칙 제 26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 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시·군
 - 라. 도 지방공기업
 - 마. 도 출연기관(다만, 100분의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개정 '10.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1.09.26)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제2조제3호 다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1.09.26)

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09.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1.09.2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11.09.26)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직전도급 계약금액	천원	변경도급 예정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사업 개요					
<p>○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p> <p>-</p> <p>-</p>					
<p>○ 첨부 서류</p> <p>1. 설계변경이유 조서</p> <p>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p> <p>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따른입찰의예정가격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 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 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몰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몰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 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 위한 참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 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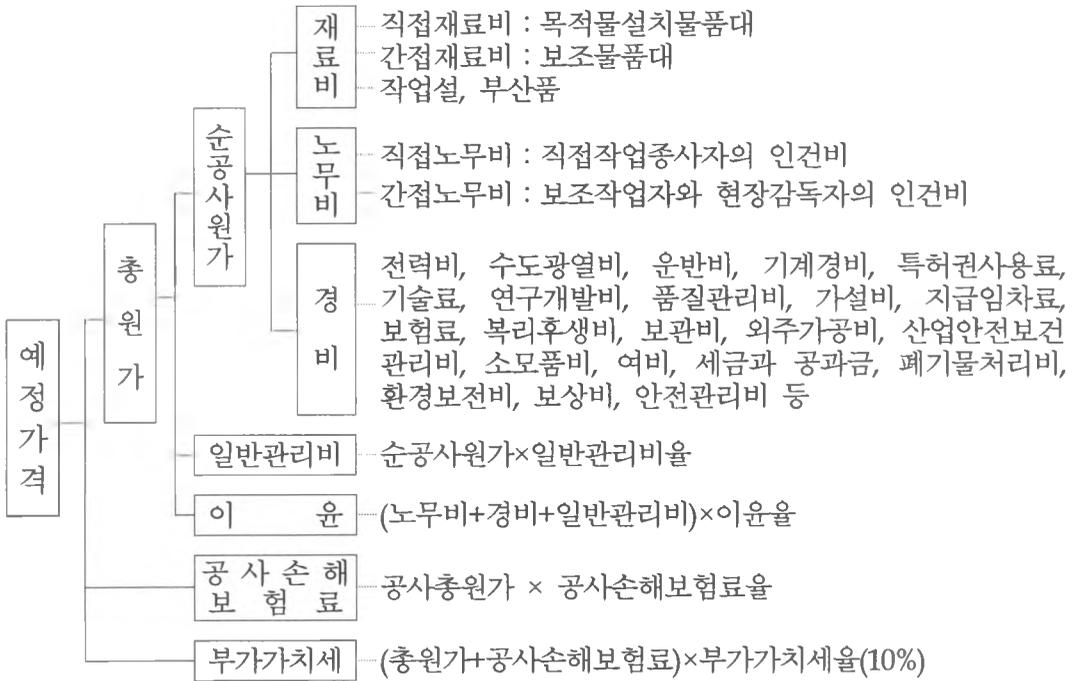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 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 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 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 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 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 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 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 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 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 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

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 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2년 2.2%)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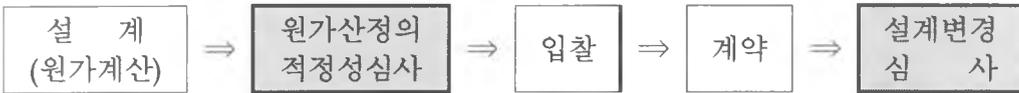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과제74조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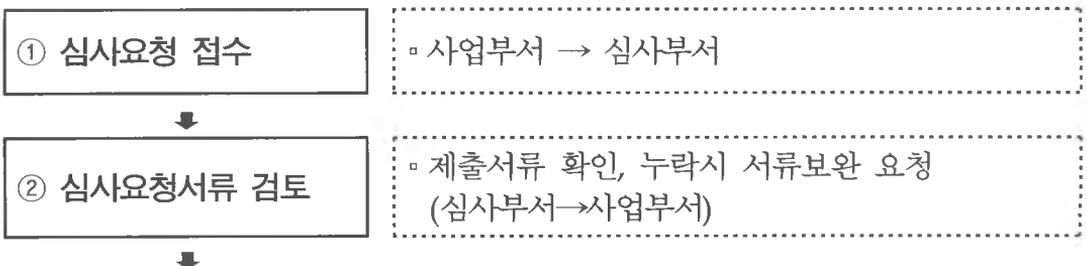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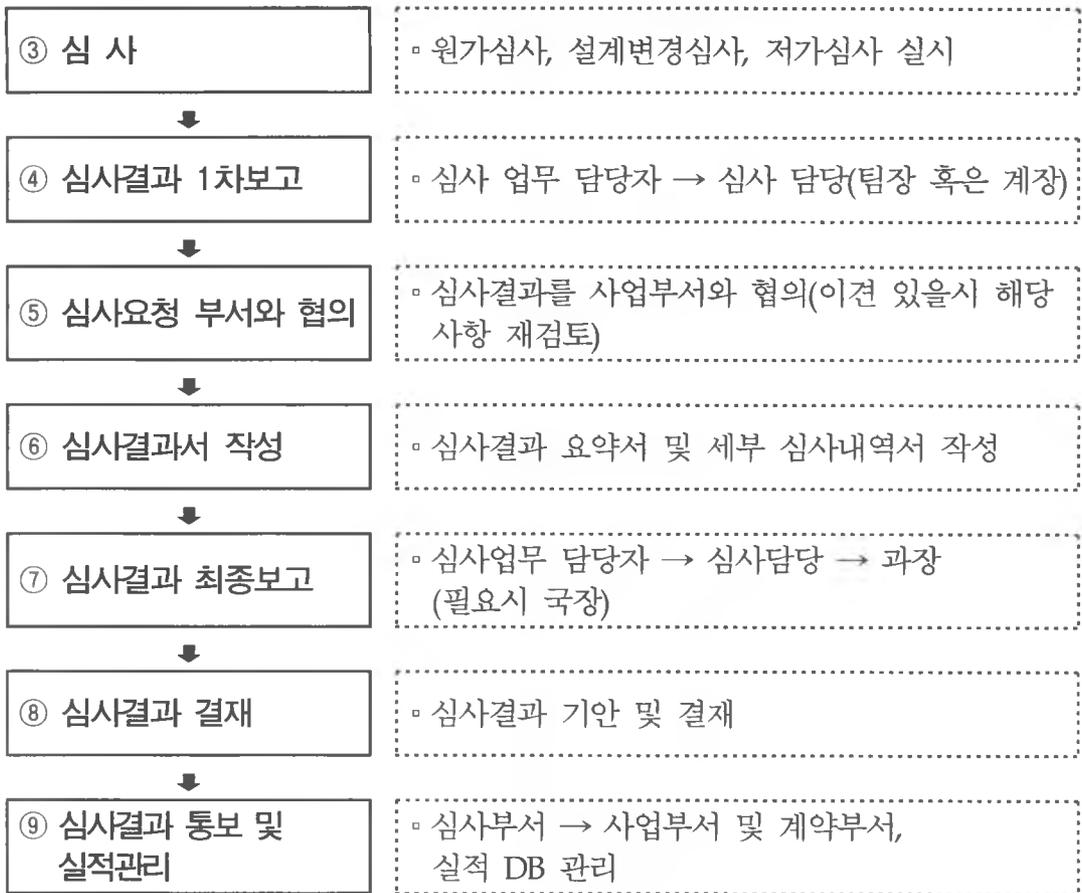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 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

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 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 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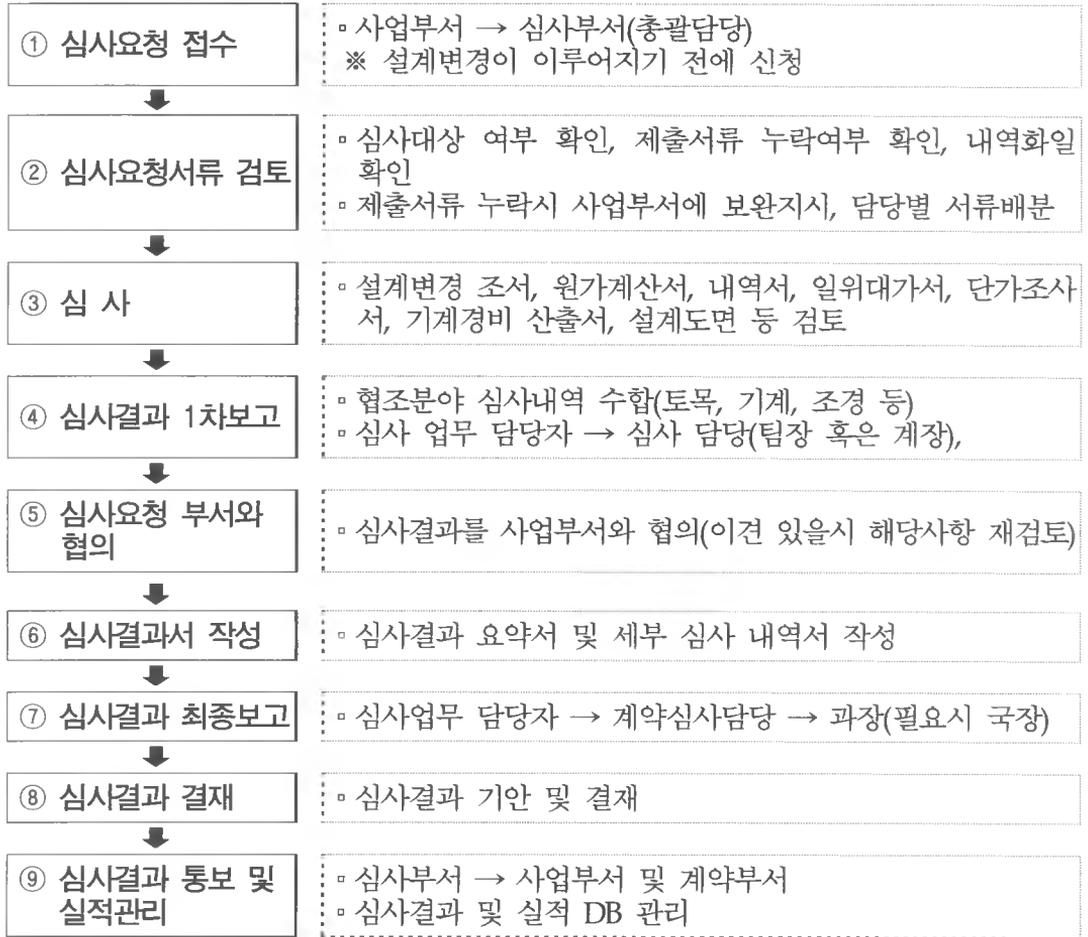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제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 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

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 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 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공사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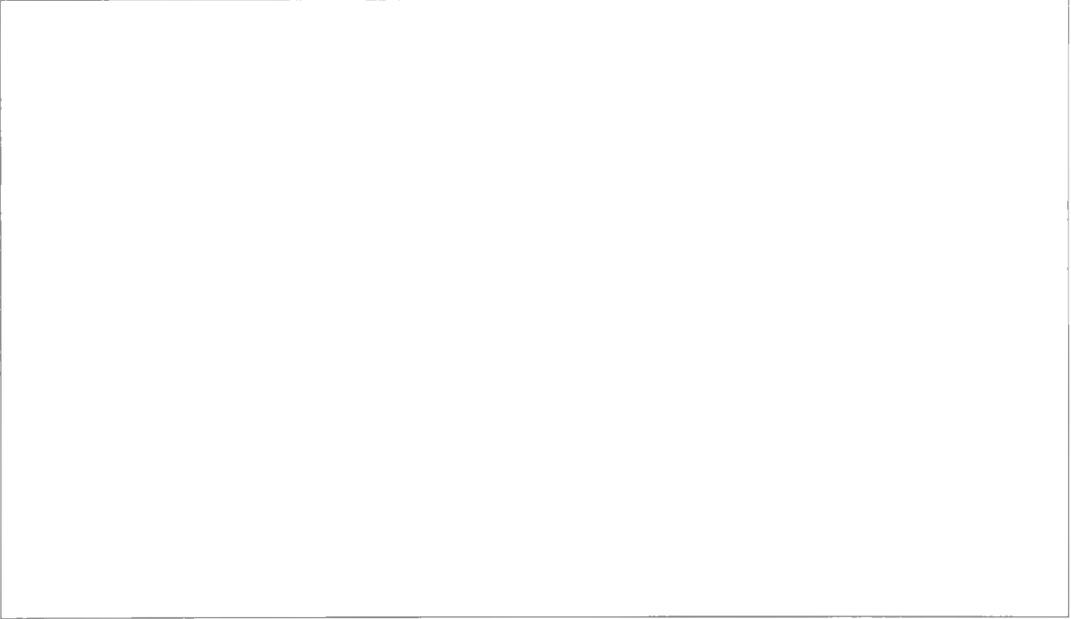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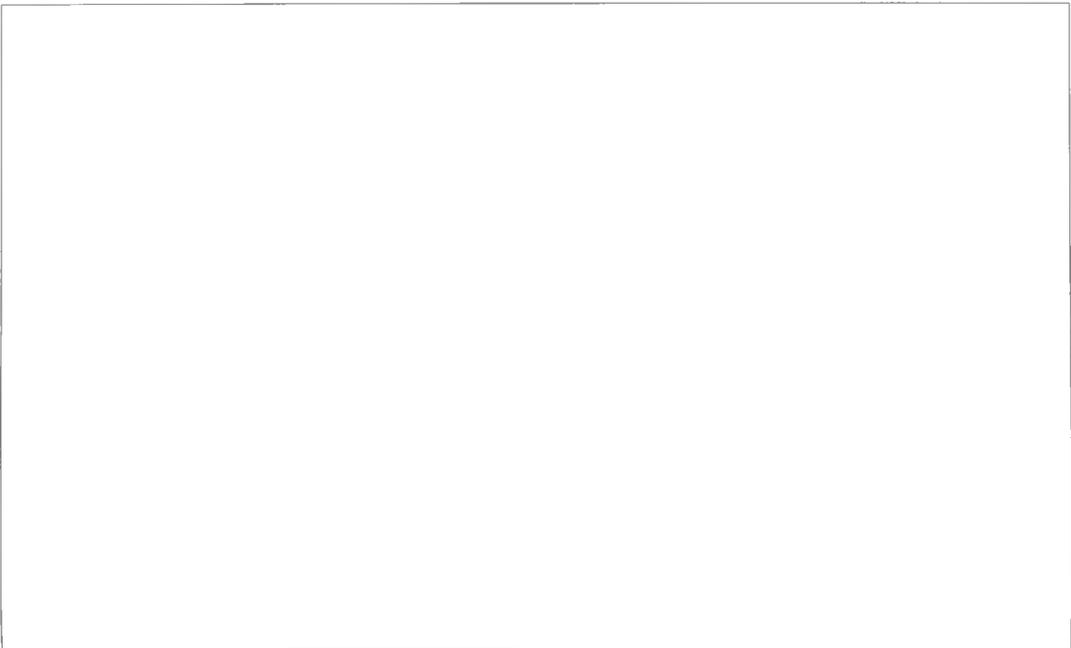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시행일자	. . .	협 조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원)	
								단 가	금 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확인자

성명 (인)
성명 (인)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과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 · 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과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협 조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 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 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 에 '필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 이내)			
소 계			
이 율(10% 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행	○○○○과-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